

## 2026년 제5회 화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

2026년 제5회 화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일

화성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

### 채용분야 및 인원

구분	임용분야 (근무부서)	임용 직급	인원	임기	근무 시간	시험 방법	담당업무
일반임기제	정책지원관 (상임유원회)	7급	3	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	주40시간	서류전형 면접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li> <li>-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li> <li>-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li> <li>-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li> <li>-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작성·참석 지원</li> <li>-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li> </ul>
일반임기제	방송실 운영관리 (홍보팀)	8급	1	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	주40시간	서류전형 면접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송실 운영관리</li> <li>- 영상방송시스템 유지보수</li> <li>- 영상편집</li> <li>- 페이스북·인스타그램·트위터 등 SNS관리</li> <li>- 홍보게시판관리</li> <li>- 의회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</li> <li>- 그밖에 부서장이 판단한 업무 등</li> </ul>
시간선택제 임기제	속기사 (의정기록팀)	마급	1	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	주35시간	서류전형 면접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의록 작성</li> <li>- 전자회의록 등록 및 관리</li> <li>- 의회운영에 따른 업무 지원</li> </ul>

※ (계약기간 연장관련)근무실적 및 해당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 연장계약 가능

## 2

## 근 거 법 령

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-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## 3

## 시 험 방 법

### 가. 서류전형

-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.

(채용분야 관련 학력·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)

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실시

### 나. 면접시험

-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- 평정요소
  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  -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  -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  -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  -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불합격 기준 :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

## 4

## 응 시 자 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거나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.

**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**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**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
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.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 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 포함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나. 주소지·성별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자)

다. 응시연령: 18세 이상 (2007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라.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(적용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※ **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는 퇴직 후 3년 (중증장애인의 경우 5년, 시간선택제/한시임기제/2명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**

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
※ **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(주40시간 기준)**  
예시)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⇒ 1년으로 인정

- 다음 임용예정분야 **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**하는 **경력 자격기준**을 갖춘 자

구 분	응시자격
<p><b>정책지원관</b> (일반임기제7급)</p>	<p>1.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<b>【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국회, 지방의회, 공공기관,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행정, 예산, 결산, 회계, 재정분석, 감사, 조사, 정책개발 지원, 대외협력 업무, 지방자치 분야 실무경력자</li> </ul> <p>(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)</p> <p>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.</p>
<p><b>방송실운영관리</b> (일반임기제 8급)</p>	<p>1. 고등학교 졸업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<b>【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방송시설 운영·관리 분야 실무경력자 (디지털광고물 분야 및 방송시설 분야 경력 모두 요함)</li> </ul> <p>(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)</p> <p>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</p> <p><b>【추가 필수자격요건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(실제 운전 가능)</li> </ul> <p>&lt;우대사항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통신관련 아래 자격증을 취득하고, 임용예정 직무분야(통신)에 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※ 기능사(3년 이상), 산업기사(2년 이상), 기사(6개월 이상)</li> </ul>
<p><b>속기사</b> (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)</p>	<p>1.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<b>【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력분야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 관련 업무 경력</li> </ul> <p><b>【추가 필수자격요건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글 속기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</li> </ul>

- ※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일반(시간선택제)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.
- ※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(첨부양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의 내용에 「우리 대학(원)의 ○○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○○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

## 5

## 보수 수준

가.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**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**으로 하되, 경력 등을 고려하여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결정함.

임용예정 분야	임용직급	근무시간	연봉액[기본연봉(하한액)]
정책지원관	일반임기제7급	주40시간	50,272천원
방송실운영관리	일반임기제8급	주40시간	44,296천원
속기사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주35시간	26,532천원

나.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

다.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**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**)

라.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(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)

마.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
※ 가족수당, 가족수당가산금, 초과근무수당, 연가보상비 등

바. 복리후생 : 복지포인트 지급,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적용

## 6

##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

가. 접수기간 : 2026. 7. 7.(화) ~ 7. 10.(금) / 4일간

나. 접수장소 : 화성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(의회청사 2층)

⇒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(09:00~18:00)에 접수함

※ 단,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국·공휴일 제외

다. 접수방법 : 방문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(※택배, 퀵서비스 접수 불가)

##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

- 우편접수는 **접수마감일 18: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** 유효하며,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☎031-5189-6034)  
주소 : (18274)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,  
화성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인사팀 인사담당자
- **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, 받을 분 기재금지 ※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**
- 응시표는 접수 마감 후, e-mail을 통해 송부하므로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 정확히 기재
- **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**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미비 서류에 대한 **보완은 접수마감일 18:00까지**입니다. 접수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합니다.

### 라. 제출서류 (\* 서류제출시 스테이플러 편철금지.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)

- ① 응시원서 1통(붙임서식) :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
  - (방문접수) 화성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에서 **화성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제출**
  - (우편접수) **우편통상환 구입 후 동봉 발송**  
※5(가)급 1만원, 6(나)급~7(다)급 7천원, 8(라)급~9(마)급 5천원
- ② 이력서 1부(붙임서식)
- ③ 자기소개서 1부(붙임서식)
-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(붙임서식)
-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
-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각 1부(붙임서식)
-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붙임서식)
- ⑧ 학사(전문학사 포함)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
  -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
- ⑨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[자체서식 또는 붙임서식]
  -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  - 발행기관 **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(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)**
  -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(날인)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(**근무기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 필수 기재**)
  -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  - 시간제 근무, 비상근직, 프리랜서,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**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**하여야 함

-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’를 첨부하여 제출,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.
- ※ **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**
- ⑩ **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(경력확인용)**
  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  -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‘보험가입 전체기간’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
  - **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**
- ⑪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, **원본지참**)
-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, 외국어능력, 정보화 자격증 등(해당자에 한함, **원본지참**)
  - 어학능력성적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
- 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(붙임서식)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(**필수자격 요건 또는 우대조건에 있는 경우에 한함, 원본제출**)
- ⑭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기기술서(붙임서식) 및 실적 확인서 1부(해당자에 한함, 원본제출)
  - ※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
- ⑮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(붙임서식)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
  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(학력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**한글번역본(공증필)** 첨부
- ⑯ **포트폴리오**(해당자에 한함)
  - A4용지 단면 10매 이내(표지 제외)로 작성
  - ※ 개인정보(성명, 출신학교명, 출생지 등)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
  - ※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응시자의 실무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 면접시 활용할 예정(반환불가)

## 7

## 시험일정 (잠정일정)

시험공고	원서 접수	서류전형 (합격자발표)	인성검사	면접시험	최종 합격자 발표
'26. 7. 1. ~ 7. 10.	'26. 7. 7. ~ 7. 10.	'26. 7. 16. (예정)	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고	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고	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고

-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,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(개별 연락 없음)
-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
- 인성검사·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
-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면접위원에 제공
  - ※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※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하므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공고일정부터 연기 될 수 있음

## 8

## 기 타 사 항

- 가. 화성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 - ※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
- 다.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하며,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라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마. 응시원서 접수 결과,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.

바.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.

사.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(일반임기제에 한함)

아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(결과)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를 공개합니다.

-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.
-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,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.

자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채용절차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: 화성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 (☎031-5189-6034)

붙임 직무기술서 각 1부. 끝.

# 직무기술서

직무군	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선발예정인원
행정	정책지원관	일반임기제7급 (행정)	3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화성시의회	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

<b>주요업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li> <li>○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li> <li>○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li> <li>○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li> <li>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작성, 참석 지원</li> <li>○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li> </ul>
-------------	--

<b>필요역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성실성</li> <li>○ 상황인식/판단력, 분석력,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업무조정능력</li> <li>○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비판능력을 통한 견제능력</li> <li>○ 행정사무감사(조사) 보좌능력 및 의사진행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력</li> </ul>
-------------	--

<b>필요지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의회와 의사진행(회의규칙 등) 절차</li> <li>○ 예·결산안과 정책수립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위한 지식</li> <li>○ 화성시 주요현안시책 및 시정운영에 대한 지식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<b>응시자격요건</b>	<b>관련분야 : 정책지원관(일반임기제 7급)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래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/li> </ul> <p><b>【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국회, 지방의회, 공공기관,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행정, 예산, 결산, 회계, 재정분석, 감사, 조사, 정책개발 지원, 대외협력 업무, 지방자치 분야 실무경력자</li> </ul> <p>(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)</p> <p>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.</p>
<b>우대요건</b>	○ 해당없음

# 직무기술서

직무군	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선발예정인원
행정	방송실운영관리	일반임기제8급 (방송통신)	1명
임용예정기관명		근무예정부서	
화성시의회		홍보팀	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실 운영관리</li> <li>○ 영상방송시스템 유지보수</li> <li>○ 영상편집</li> <li>○ 페이스북 · 인스타그램 · 트위터 등 SNS관리</li> <li>○ 홍보게시판관리</li> <li>○ 의회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</li> <li>○ 그밖에 부서장이 판단한 업무 등</li> </ul>		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성실성</li> <li>○ 상황인식/판단력, 분석력,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업무조정능력</li> <li>○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비판능력을 통한 견제능력</li> <li>○ 행정사무감사(조사) 보좌능력 및 의사진행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력</li> </ul>		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홍보기법에 관한 지식</li> <li>○ 유튜브, 소셜미디어 등 기획·촬영·편집 능력</li> <li>○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실무능력</li> </ul>		
응시자격요건	<b>관련분야 : 방송실 운영관리(일반임기제 8급)</b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래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 졸업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/li> <li><b>【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방송시설 운영·관리 분야 실무경력자 (디지털광고물 분야 및 방송시설 분야 경력 모두 포함) (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)</li> <li>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</li> </ul> </li> <li><b>【추가 필수자격요건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(실제 운전 가능)</li> </ul> </li> </ul>		
우대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신관련 아래 자격증을 취득하고, 임용예정 직무분야(통신)에 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※ 기능사(3년 이상), 산업기사(2년 이상), 기사(6개월 이상)</li> </ul>		

# 직무기술서

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선발예정인원
속기	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화성시의회	의정기록팀

주요업무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임위원회, 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</li> <li>○ 전자회의록 등록 관리</li> <li>○ 그밖에 부서장이 판단한 업무 등</li> </ul>

필요역량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성실성)</li> <li>○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</li> <li>○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이해력 및 속기 능력</li> <li>○ 행정사무감사 및 의사진행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력 등</li> </ul>

필요지식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속기 능력 및 의사진행 능력</li> <li>○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 지식</li> </ul>

관련분야 : 속기사(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)	
응시자격요건	1.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<b>【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】</b>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국회, 지방의회, 공공기관, 법인 등에서 속기 관련 업무 경력  <b>【추가 필수자격요건】</b> • 한글 속기(컴퓨터 속기)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
	<b>우대요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없음</li> </ul>